

# 「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소재 낙동강 둔치 내 「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」 추가 구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캠핑장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제명 변경

- (당초)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(변경)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

#### 나. 목적,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#### 다. 캠핑장 추가 구성에 따른 시설 사용 관련 정비(안 별표 1~5)

#### 라. 띄어쓰기 정비(안 제8조~제10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)

### 4. 참고사항

#### 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제153조, 제156조, 제161조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소재 낙동강 둔치 내 「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」(고아읍 괴평리 1123번지 일원) 추가 구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안 제1조에 관리·운영의 범위를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캠핑장으로 규정하고, 안 제2조에서는 추가 조성된 「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」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별표1에서 별표5를 수정하였음.
- 캠핑장의 주요시설이 증가하여 주민들이 편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양호동에 위치한 기존의 「구미캠핑장」과 고아읍 괴평리에 위치한 신규 캠핑장인 「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」의 구분이 어려워 캠핑장 개장 초기에는 시민들의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